

- 2025년도 제11회[3차 재공고] -

부산광역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

부산광역시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5년 11월 26일

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장

1. 근거법령

- 지방공무원법(법률 제20621호, 2025. 7. 1.)
- 지방공무원 임용령(대통령령 제35564호, 2025. 6. 4.)
-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(행정안전부 예규 제327호, 2025. 6. 2.)
-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규칙(부산광역시 규칙 제4146호, 2024. 4. 3.)

2.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▷ 1개 분야 1명

임용분야	근무예정부서	임용등급	인원	비고
임상심리치료	아동보호종합센터 (심리치료팀)	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(주 35시간)	1명	

※ 임용기간 : 임용일로부터 1년, 5년 이내 연장 가능(사업 계속 시)

3. 임용분야 주요업무

임용분야	주요업무
임상심리치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고난도 및 맞춤형 심리서비스 제공(면담, 평가, 치료, 상담 등)○ 아동보호전문기관,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보호아동 심리서비스 제공○ 부산시 아동보호기관 심리치료 전문인력 역량 강화 교육 지원○ 개인·집단 상담(치료)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콘텐츠 기획 지원○ 지역사회 심리서비스 관련 현황 조사 및 자원 개발·연계 지원○ 기타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지원사업 운영 관련 사항

4. 응시 자격

가. 공통요건(결격사유 등)

- 지역 · 성별 : 제한없음 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- 연령 : 18세 이상 (상한 제한 없음)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<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>

1. 피성년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2019.4.17.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)
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
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<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>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 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나. 분야별 자격요건(기준일 : 최종시험(면접시험) 시행예정일)

임용분야	임용직급	자격요건
임상심리치료	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(주 35시간)	<p>※ 다음 학위·전공·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학력) 채용 직무 분야와 관련된 학사(이상)학위 취득자 2. (전공) 심리학(임상심리) 3. (자격)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소지자 <p>▶ 우대요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-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*관련분야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<p>* 관련분야 및 실무경력 인정 범위</p> <p>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연구기관, 의료기관, 사회복지시설, 심리지원센터,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서 임용 분야 주요 업무(심리서비스-평가·치료·상담 등)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</p>

※ 자격요건은 보건복지부 “2025년도 거점 심리지원팀 운영지침” 종사자 자격 기준에 따름

5. 시험방법

가. 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응시자의 경력·자격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(서면 심사)

※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, 아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, 합격자는 선발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

※ 이 경우 서류전형 평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응시자 적의 판단하에 접수기간 내 기타서류 제출

심사항목 배점기준	일반 전형요소			전문분야별 전형요소					
	소계	자기 소개서	직무 계획서	소계	관련분야 근무경력	직무관련 자격증 등 능력도	직무분야 전공관련	직무관련 연구이력 및 업무성과물	직무관련 포상 등 기타실적
100	30	15	15	70	30	15	15	5	5

나. 2차 시험 : 면접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평정표에 의거 개별면접

- 평정요소 및 평가방식

- 평정요소 :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
- 평가방식 : 5개 평정 요소마다 상·중·하로 평가

- 합격자 결정

- 위원의 과반수가 면접시험 5개 평정요소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'하'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'하'로 평정하였을 경우 불합격으로 함

- 불합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응시자 중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

- 면접시험 평정결과 동점자 발생의 경우('상'의 개수 동일), '중'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하되, '중'의 개수도 동일한 경우 *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합격자로 결정함

*취업지원대상자 :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

6. 보수 수준

구 분	상한액	하한액	비 고
5급(상당)	-	67,307 천원	
6급(상당)	83,677 천원	55,756 천원	
7급(상당)	68,388 천원	48,572 천원	
8급(상당)	59,996 천원	42,798 천원	
9급(상당)	52,829 천원	-	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

※ 상기 보수액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액임

※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고용보험 (실업급여)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7. 시험 일정(예정)

시험공고	응시원서 접수기간	시험구분	시험일시	시험장소	합격자발표
'25.11.26.(수)	'25.12.4.(목) ~ 12.8.(월)	서류전형	'25.12.11.(목) ~ 12.12.(금)	부산광역시청	'25.12.15.(월) 예정 ※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공고 (시험일시, 장소 등)
		면접시험	'25.12.23.(화) ~ 12.31.(수)	부산광역시청	'26.1.13.(화) 이내

※ 시험일, 면접 장소,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

8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가. 원서교부 : 시 홈페이지 게시(내려받아 사용)

나. 접수처 : 시 인사과 인재채용팀(시청 10층)

다. 접수방법 :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

※ 접수시간은 09:00~18:00 (점심시간(11:30 ~ 12:30) 제외), 토·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

-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에 한하여 유효함
(우 47545)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(연산동) 부산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
 - 우편 접수 시는 '우체국 통상환증서(응시수수료)'를 함께 우송
- ※ 정부수입인지 아님에 유의

라. 응시표(응시번호)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응시원서에 기재된 응시자 전자메일로 통보 예정(전자메일이 없는 경우 휴대폰 SMS 통보)

9. 제출서류

가. 공통사항 * 「**불임2. 응시자 제출서류 서식**」 목록별 작성요령 반드시 참조

구 분	내 용
1.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(별지 제1호) : 필수제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각종 제출서류 목록별 구비 여부 및 누락 사항 등 점검(체크)·제출
2. 응시원서 1부 (별지 제2호) : 필수제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응시수수료 납부 후 제출 *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방문접수) 부산광역시 수입증지(부산시청 2층 통합민원과) 날인 - (우편접수)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(우체국 금융업무 마감시간 유의) <p>* 응시수수료 : 5급(가급) 10,000원 / 6 ~ 7급(나 ~ 다급) 7,000원 / 8급 ~ 9급(라급 ~ 마급) 5,000원</p>
3. 이력서 1부 (별지 제3호) : 필수제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응시자격 관련 경력사항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○ 경력증명서 상의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(근무기간, 직위, 담당업무 등) ○ 자필 서명 필수 <p>*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</p>
4. 자기소개서 1부 (별지 제4호) : 필수제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○ 자필 서명 필수 <p>*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, 나이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기재 금지</p>
5. 직무수행계획서 1부 (별지 제5호) : 필수제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○ 자필 서명 필수 <p>*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, 나이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기재 금지</p>
6. 학위증서(졸업 증명서) 1부 : 필수제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위별 학위증서 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학교(전문학사) 이상은 모두 제출 - 고교 이하 졸업자의 경우 최종학력의 졸업증명서 제출 <p>* 학위요건이 필수 자격요건인 경우, 채용 분야 직무기술서에 기재된 관련학과와 학위명이 상이한 경우 동일계통학과증명서(응시자 제출서류 서식 중 “별지 제8호”) 필수 제출</p> <p>*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(최종 합격 시 사실 공증)</p>

구 분	내 용
7. 경력증명서 1부 : 필수제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발행기관 관인 날인 및 발급담당자 성명·연락처 필수 기재 ○ 근무부서, 직위(급), 담당업무, 재직기간, 주당 근무시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인정(불명확할 경우 불인정) 되며, 경력기간 산정은 공고문에 기재된 일정상 '최종시험(면접시험) 시행예정일' 기준 ○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(강사, 프리랜서 등)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,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○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,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<p>※ 해외 경력은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(최종 합격 시 사실 공증)</p> <p>※ 임용 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, 경력증명서의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증빙서류(근로약정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내역, 근무경력 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'사업자등록증', 폐업기관의 경우 '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' 등)를 첨부하여야 함</p> <p>※ 발행기관 양식상 구체적인 업무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, 인사담당자의 자필확인(서명 필수) 또는 '붙임2. 응시자 제출서류 서식' 중 별지 '참고. 경력증명서' 서식 활용</p>
8. 건강보험자격특실 확인서 1부 : 필수제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s.or.kr)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○ 경력증명서 상 모든 경력기간에 대한 검토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'보험 가입 전체기간'으로 발급 <p>※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 등 건강보험자격특실확인서 상 근무경력 확인이 불가한 경우, 경력기간의 산출을 위해 근무기관 급여 입금명세서, 보수내역,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, 은행거래내역서 등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</p>
9. 동의서 각 1부 (별지 제6호·제7호) : 필수제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필 서명 필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(별지 제6호) 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(별지 제7호)
10. 증명사진 1매 : 필수제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추후 시험 시 본인 확인용이며, 규격 무관
11. 자격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력 외 자격요건이 요구되는 분야의 경우 필수 제출 <p>※ 자격증이 필수 자격요건인 경우, 해당자격증 사본 필수 제출</p>

나. 개별사항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
- ① 지원 분야 기타 근무실적, 업무성과물 및 특이사항
 - ▶ 필요시 전체 실적 등을 정리한 요약본 제출(A4 3매 이내(자유서식))
 - ▶ 근무실적(성과물 등)은 경력인정 범위 내 작성되어야 하고, 자료제출은 5점 이내로 한정
- ② 업무관련 자격증 또는 외국어 능력시험 성적증명서
 - ▶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, 정부기관·민간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(졸업)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·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
 - ▶ 자격증이 필수요건인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, 해당 자격증 사본 필수 제출
- ③ 학위·연구논문 사본, 저서, 특허등록, 기타 연구개발 등 실적 자료
 - ▶ 학위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를 첨부(자유서식)하고, 논문 표지 및 서론 사본(10페이지 이내) 제출
- ④ 각종 대회 수상·상훈 및 포상·표창 등 증빙자료
- ⑤ 동일계통 학위(학과) 증명서 <별지 제8호 서식>
 - ▶ 학위 기준(필수요건)으로 채용하는 분야에서, 응시자가 취득한 학위가 응시 자격의 관련분야 학위(학과) 명칭과 상이한 경우 필수 제출

다. 유의사항

- 모든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(필수서류)대로 정리한 후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(스테이플러 사용 금지)
-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
-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음
-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(단, 어학 능력은 2년 이내) 발행분으로 제출하며, 제출된 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(접수(우편도착) 익일까지로 한정하며, 접수기간 경과 후 신규 서류제출 절대 불가)
-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경력증명서, 학위, 논문 등)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(미제출시 인정 불가) ※ 최종 합격 시 사실 공증
- 입증자료는 사본으로 제출하며 필요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10. 기타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철저히 확인한 후 출원하기 바람
-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는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
- 응시자(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를 포함)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3조의 3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임용 시험에 개입하거나 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임용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
-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임용 포기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, 추가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합격 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- 합격자발표 등 모든 일정은 시 홈페이지(www.busan.go.kr)에 게시
-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사항은 시험 시행 7일 전에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
- 문의 연락처
 - 응시 관련 : 부산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(051-888-1975)
 - 직무 관련 :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심리치료팀(051-240-6342)

붙임 1. 직무기술서 1부.
2. 응시자 제출서류 서식 1부. 끝.